

관광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남창우/상주대학교 교수

조계근/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틀만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선 참여정부가 각종 지방분권에 관한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틀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관계 변화에 따른 예산증가(특히 방위비 증가문제), 대내외적 경제문제,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만 수도 이전계획 등에 따른 비용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긍정적인 일이므로 그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지방자치의 발전은 건실한 지방재

정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중의 하나인 자주재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독자적인 세원개발과 탄력적인 조세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 관광세는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수입과 관광관련 지출의 보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 관광개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세원인 관광세의 도입방안과 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구상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자치

〈표 1〉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단체 : 단체수)

자치립도	단체수	합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구성비(%)				
합 계		248	100	16	72	91	69
10%미만		2	1	-	-	2	-
10~30%		108	44	6	21	74	7
30~50%		85	34	2	24	11	48
50~70%		28	11	3	12	4	9
70~90%		20	8	4	14	-	2
90%이상		5	2	1	1	-	3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1

〈표 2〉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지 역	총생산액(10억원)		증가율	1인당총생산액(원)
	97년	98년		
전국	452,012	442,334	-1.7	9,526
서울	97,946	94,410	-3.6	9,308
부산	27,759	27,235	-1.9	7,115
대구	16,065	14,822	-7.7	5,873
인천	21,148	19,950	-5.7	8,081
광주	9,986	9,209	-7.8	6,913
대전	9,735	9,833	1.0	7,169
울산	-	20,877	-	20,025
경기	78,471	82,731	5.4	9,517
강원	12,374	11,616	-6.1	7,794
충북	15,325	15,403	0.5	10,576
충남	19,375	18,829	-2.8	10,285
전북	15,459	14,728	-4.7	7,657
전남	23,158	22,447	-3.1	10,893
경북	28,849	27,285	-5.4	9,932
경남	52,073	31,258	-	10,441
제주	4,466	4,152	-7.0	7,881

주)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 매일경제, 2000. 6. 8.

단체들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지방세 신설¹⁾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중에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와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경우는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이 경기도 의왕시는 내륙 컨테이너에 대해 부산시의 항만 컨테이너세와 비슷한 지역개발세 차원의 신설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즉 ICD(내륙컨테이너 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컨테이너 대당 1만원의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관광시설 이용자들이 부터 일정액을 지방세로 수익자 부담원칙의 관광세²⁾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대전시·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난 '42~'46년 운영되다 폐지된 광고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홍도·독도 등 유명 관광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들은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심지어 군부대 등이 많이 위치한 경기도 의정부와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군시설 점용지에 대해 각종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온천이 많이 있는 경기도, 강원도, 경남지역은 온천세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양덕순, 1999).

III. 관광세의 의의와 외국의 실태

1. 관광세의 의의

관광세란 관광객들의 관광자원이나 고급 여가시설의 이용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가 관광자원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이다.³⁾

결국 관광자원의 수혜자인 관광객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세제인 것이다.

관광자원은 유무형문화재 및 건축물, 예술품, 박물관, 기념관, 풍속과 신앙 등 인문관광자원, 산악, 해안, 삼림, 하천, 호수, 온천 등과 같은 자연관광자원으로 구분되며, 관광 관련 사업체란 호텔 및 그 부대시설, 골프장, 고급음식점, 기념품판매장 등 고급여가시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광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관광행위란 관광객이 관광시설이나 자원에 입장하거나 관광숙박업 및 그 부대시설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1) 1991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각 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경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더욱 가시화됨.

2) 관광세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인 9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

3) 오연천 1987, 과 양영철, 1990년 참조.

〈표 3〉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세원 구상

세 목	내 용	해당지역
관광세	· 각종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해 관광입장료의 10%를 관광세로 부과 · 시·군 관광자원이나 호텔의 유기장 유흥업소 수입의 일부를 관광세로 징수	· 강원도, 제주도, 충북 등 · 경북, 제주
광고세	· 지난 '42~'46년 운영되다 폐지된 광고세부활을 추진 · 지역방송이나 옥외시설물 등의 광고료에 10%의 광고세 부과	· 서울, 대전, 충남, 대구 · 경북
입도세(入島稅)	·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도세 징수	· 제주, 홍도, 독도등 유명 관광지 관할자치단체
온천세	· 골프장, 온천 등이 있는 지역에서 부과	· 경기, 경남 등
벌크화물세	·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 인천
내륙컨테이너세	·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 경기도 의왕시
컨테이너세	· 신흥 공업항의 처리능력 향상 재원마련을 위해 신흥공업항에 컨테이너세 부과	· 울산시, 여천시
시멘트제조세	· 시멘트 1부대 가격 2천원당 25~30%의 시멘트 제조세를 부과하여 인상분을 전액 지방세로 시·군에 납부	· 강원도 동해·영월·삼척, 옥계, 충북 신단양, 경북 등 6개 시·군
재산세 부과	· 군부대 등이 많이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군시설 점용지에 재산세 부과 · 사회복지사업재단에 대한 재산세 부과	·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철원군 · 강원도 홍천군
입도세(入島稅)	·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에게 입도세 부과	· 경기도

자료: 이 효(1996).

일련의 행위이다.

관광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의 분포가 보편적이고 몇몇 시도에서 도입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대다수 단체가 관광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

어 중앙정부와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보편성이 있다.

둘째, 과세대상인 관광행위가 소득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소득탄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수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장차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세수의 신장성도

보장되고 지방자치제도도 장기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관광객들이 관광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 교통혼잡, 비용부담, 근로의욕의 저하 등 다양한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시장경제의 가격기구는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불경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광행위에 대한 관광세는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여가행위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세에 비해 반발은 적지만, 다른 지역으로 조세수출(tax export)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1) 자주재원의 확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며, 이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증하므로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득이 증대되면 대부분의 관광지는 과거처럼 여름 피서철만 이용되는 휴양지가 아니라 사철 휴양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합휴양시설, 온천, 골프장, 해양시설 등 위락시설과 관광자원의 이용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원리의 관광세를 부과한다면 지역의 경제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2) 관광개발의 재원조달

과거의 관광상품은 기존에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관람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재정구조 하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한 재정조달이 어려우므로 관광세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3) 수익자 부담원칙의 실현

관광에 대한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요자는 관광객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에게 각종 관광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제공하며, 양질의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광객은 관광자원이나 시설을 사용하여 여가의 만족을 누리므로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의 관광에 의한 수익은 대부분 관광관련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행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응징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관광비용에 부가적으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의 균형유지와 관광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4) 지방경제의 활성화

관광세가 신설된다면 이 재원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재투자될 것이므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게 되고, 특히 SOC사업에 재투자되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기반 조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3. 외국의 관광관련세 실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데 부과하는 관광세는 각국마다 부과범위와 명칭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관광자원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시설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관광사업체에 부과하는 체재세, 관광계획이나 자원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계획세와 개발세, 관광지 입장객들에게 부과하는 입장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징수편의와 조세저항방지를 위해 간접세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 일 본

일본의 관광관련 세제는 특별지방소비세, 골프장이용세, 수렵장 등록 및 입렵세, 입탕세 등이 있다. 이중 특별지방소비세와 골프장이용세, 수렵장등록 및 입렵세는 도부현세로 간접세이고, 각각 이용요금의 3%, 골프장이용세는 골프장이용자에 따라 8단계, 등록 및 입장시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입탕세는 시정촌세로 간접세이며, 입장료

에 150엔이 추가로 부과된다.

2) 미 국

미국의 관광관련 세제는 숙박세, 오락세, 식음료수세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숙박료의 10%내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숙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부가세 성격이므로 관광수요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부담자가 주로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락세는 극장, 나이트클럽, 스포츠센터 등의 유흥업소에 출입할 경우 입장료에 6%내외의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라스베가스나 하와이 등 특정 관광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카지노오락세, 도박세, 일시숙박세 등 주세가 간접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식음료수세는 식음료수의 소비자들에게 주세로 5%정도를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부과한다.

3) 대 만

대만의 관광관련 세제는 오락세로 보통수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고급수준인 무도장, 영화관, 직업가수공연, 오페라, 골프장 등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에 6~10%의 부가세로 오락세를 부과하고 있다.

4) 기타 국가

그 외에 여러 국가들이 관광개발과 보전

〈표 4〉 국별 관광관련 세제현황

국 별	세 목
일 본	골프장이용세, 입탕세
미 국	호텔숙박세, 관광오락세, 식음료수세
대 만	오락세
독일, 스페인	관광인지세
이탈리아	특별요양세
프랑스, 스위스	체재세
불가리아, 폴리네시아	관광계획세
멕시코	천연자원개발세, 입장세
페루	소비세
캐나다, 스웨덴	산림세
호주, 인도, 홍콩	입장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입탕세
싱가포르	관광진흥세

자료 : 강원도 연구단,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세 도입방안』, 1995를 재정리함.

및 관광지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반세 유형이지만 일부국가들은 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IV. 관광세의 도입방안과 도입효과

1. 관광세 도입방안

관광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법에는, 첫째, 관광자원의 특정 이용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관광자원의 포괄적인 이용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관광지의 입장료, 주차료, 관광유람선, 헬기사용료, 모터보트, 요트, 골프장, 수렵장 등의 이용료에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의 이용행위에 관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관광지의 입장료, 주차료, 관광유람선, 헬기사용료, 모터보트, 요트, 골프장, 수렵장 등의 이용료 및 관광사업체 이용료에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번째와 같이

입장료나 이용료에 부가적인 형태로 관광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법정외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두번째나 세번째와 같이 입장료나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관광세로 독립세화하는 방안은 국세의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와 일정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적절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양자 모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보다 손쉬운 방법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세제를 한가지 정도씩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관광세의 과세요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광세의 과세 대상은 관광행위를 하면서 환경을 오염·훼손하는 행위와 당해 지역내 교통혼잡, 쓰레기 배출 등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와는 성격이 다르고, 일반적인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도 다르다.

따라서 관광행위에 대해 직접 관광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행 부가세(Sur Tax)인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과세대상의 자원이용에 따른

각종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특정 관광자원을 이용하거나 향유하는 자로 당해 시설관리자 또는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며, 과세권자는 관광자원의 유지·관리 및 개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시군이 부담하므로 과세권을 시장·군수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광행위는 관광자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나 관광비용의 대부분은 관광사업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자원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광역단체장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세의 과세표준은 이용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율은 대상자원별로 제한세율을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되, 처음 시행시는 10%정도가 어떨까 생각된다.

**3. 관광세의 도입효과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보면 자연공원, 관광지, 자연휴양림은 관광지로 분류할 수 있고, 자연 및 인공자원, 문화재, 박물관을 관광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숙박업, 휴양업, 유람선업, 관광시설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강원도 관광지중 먼저 자연공원의 보유실

태를 살펴보면, 전국의 70곳중 8곳이 소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이 20개중 3개소, 도립이 22개중 3개소, 군립은 28개중 2개소가 있다. 이들에 대한 연간 이용객과 이용수입은 1998년의 경우 각각 714만명, 114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에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도나 군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치단체가 조정하므로 지방세와 같아져 이중과세 성격때문에 관광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추가부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원의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에 대해서만 이용요금에 10%의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1억 5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의 183곳중 39곳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정관광지 175개중 32개, 안보관광지 8개중 7개, 관광단지 8개중 2개, 관광특구 19개중 2개가 있다. 이들에 대한 연간이용객과 이용수입은 1998년의 경우 각각 341만명, 48억 2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에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정권이 있어 지방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관광세 부과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서만 이용요금에 10%의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4억 8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강원도는 13개가 운영중인데 이중 국유림이 8개소, 사유림이 3개

소, 도유림과 사유림이 각각 1개소이다. 이들에 대한 연간 이용객과 이용수입은 1998년의 경우 각각 43만명, 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도 상당수준이므로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이용요금에 10%의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8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관광자원중 자연 및 인공자원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1998년말 현재 산이 62개, 계곡이 114개, 온천이 26개, 동굴이 167개, 댐이 10개 등 모두 567개소가 있다. 이들을 이용한 관광객은 1998년동안 12만 4천명, 이용수입은 2억 4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므로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 10%의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천4백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그리고 문화재 시설을 살펴보면 문화재는 강원도에 405개, 박물관은 12개, 전통사찰은 42개가 있는데, 이중 문화재와 사찰의 1998년도 이용객은 41만 2천명, 이용수입은 연간 5억정도로 나타났는데, 10%의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5천만원 정도 세수가 예상된다.

한편 박물관의 경우 이용객은 18만 6천명에 수입이 1억 16백만원이며, 10%의 관광세 부과시 11백만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또한 강원도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살펴보면, 숙박업의 경우 1998년의 경우 관광숙박업(호텔,콘도)의 이용객수가 338만 6천명정도이고 이용액이 1,133억 37백만원으로 연간 관광지 이용수입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10%의 관광세를 과세하면 연간 113억 33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한편

〈표 5〉 강원도 관광자원 이용실태(1998년말 현재)

구 분	자 원 명	연간이용객 (천명)	연간이용액 (백만원)	비 고
계		23,613	221,900	
관광지	소 계	10,989	17,125	
	자 연 공 원	7,140	11,496	국·도·군립
	관 광 지	3,415	4,824	해수욕장 포함
	자 연 휴 양 립	434	805	국·도·시·사유림
관 광 자 원	소 계	722	860	
	자연·인공자원	124	244	
	문 화 재	412	500	각종 문화재·사찰
	박 물 관	186	116	
관 광 사업체	소 계	11,902	203,915	
	관 광 숙 박 업	3,386	113,337	관광호텔·콘도
	일 반 숙 박 업	732	10,477	일반호텔·여관
	휴 양 업	1,491	2,316	종합·전문
	관 광 유 램 선 업	12	10,800	
	체 육 시 설 업	3,791	60,750	스키·골프장
	삭·퀘 도 업	1,785	3,842	
	유 기 장 업	705	2,393	

참고 : 입장료·주차료 등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장소만 조사함.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일반숙박업의 경우 이용객수가 73만여명으로 이용수입이 104억 77백만원으로 상당히 높는데 10% 관광세를 과세하면 10억 47백만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휴양업과 유람선업을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연간 150만여명이 이용하여 이용수입은 131억 16백만원이었는데, 여기에 관광세를 10%과세

하면 13억 11백만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업(스키장과 골프장)은 이용객이 연간 379만명으로 607억 5천만원의 이용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10% 관광세를 부과하면 약 60억 75백만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끝으로 삭도업과 퀘도업의 경우 연간 178만 5천명이 사용하여 이용수입이 38억 42백

〈표 6〉 관광세 과세표준과 서울(강원도의 경우)

자 원 명	과 세 표 준	세 율	예상세수 (백만원)
-자연공원(국·도·군립)	-입장·시설이용료	10%	1,150
-관광지, 관광단지	-입장·시설이용료	“	482
-자연휴양림	-입장·시설이용료	“	80
-숙박업(호텔·콘도·여관)	-숙박료	“	12,381
-휴양업(종합·전문)	-입장·시설이용료	“	232
-관광유람선업	-유람선이용료	“	1,080
-체육시설업(스키·골프장)	-입장료	“	6,075
-삭·궤도업	-삭·궤도이용료	“	384
-유원시설업	-입장·시설이용료	“	239
-카지노업	-카지노 입장세	“	a
계	-	-	22,103+a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유기장업은 7만여명이 이용하면서 23억 93백원의 이용수입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10%의 관광세를 부과한다면 6억 23백만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에 모두 관광세를 부과한다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220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자원중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등의 입장료 약 6억원과 교육목적이 많고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되는 시설인 관광자원의 이용료 8억 6천만원,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일반호텔과 여관 이용수입 104억 77백만원의 합계인 119억원은 관광세 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도 연간 총이용수입이 2,000억원이 되므로 관광세수는 약 2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

V. 결 론

최근 국가 예산의 지출증가 요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국방비(JSA경제 및 미군의 특정임무 중 대부분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 미군기지 이전 등), 복지예산,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 기타 등등 대단위 재정수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입은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여건으로 볼 때 올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추진정책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해 보

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 신세원 도입이 정부의 재정실정을 고려하고, 지방재정 확충전략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원개발연구원, 「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 1999. 7. 15.
 _____, 「강원도 지방재정의 기초통계 분석」, 1999. 12.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각년도.
 _____, 『관광기본통계자료』, 1999. 7. 15.
 강원도 연구단(1995),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
 고충석(1992), “제주도 지방재정 현황과 확충방안,” 『제주발전연구』, 제3집, 제주발전연구소.
 김정욱(1994), “관광과세화와 세부담의 지역간 전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8권 14호.
 남궁진(1993),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 신설방안,” 『지방세』, 6 : 28-41
 남동우(1996), 「강원도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환(1997), 「지방세로서 관광세 도입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양덕순(1999), “조세법률주의와 관광세 신설방안”, 세미나 자료

양영철(1990), “관광세의 신설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집, 제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이복수(199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관광세 신설에 관한 소고,” 『지역개발연구』, 제3호,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상용(1993), “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세』, 제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효(1995), “지방세의 차등부과 논의와 문제점,” 『지방행정정보』, 통권 제5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1996), “신세원 개발논의와 전망,”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임성일(1993), “자주재원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지방의회의원 연찬회 주제논문집』, 203-242.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7), 「제주도 지역경제의 육성방안」.
 Hicks, U.K.(1961), Development from Below : Local Gov't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Musgrave, R.A. and P.B.Mu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Mcgraw-Hill, Inc.
 矢野浩一郎,(1985). 「地方稅財政制度」, 東京:學陽書房.
 田中啓一.(1991). 「受益者負擔論」, 東京:東洋經濟新報社. 